

결재계통에 관한 규정

제1조 (결재계통의 의의) 결재계통이라 함은 계(팀)원으로부터 최고 결재권자까지의 승낙을 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.

제2조 (결재계통) ① 모든 문서는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계장, 과(팀)장, 부처장, 처(관, 부, 국, 원, 소)장, 부총장, 총장 순으로 결재를 받는다.

② 총장 또는 부총장 결재 사안으로서 사안 자체가 2인 이상의 부총장과 관계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사안을 분리 기안하여 해당 부총장의 결재를 받되, 불가분의 문서는 일건으로 해당 각 부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③ 모든 문서의 심의는 전결권자의 결재로 갈음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